|  |  |  |
| --- | --- | --- |
| **상업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상무부령 2012년 제2호 개정 후의 《상업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이 2012년 1월 18일의 상무부 제6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상무부 령 2007년 제16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陈德铭 　　　　　  2012년 2월 23일 　　**제1조** 특허인과 피특허인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업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관련측이라 함은 특허인의 모회사나 그 자연인, 특허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권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동일인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특허인과 타 회사의 주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리킨다. 　　**제4조** 특허인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업특허경영 계약서를 체결하는 30일전에 피특허인에게 본 방법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인과 피특허인이 기존의 특허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특허인의 정보공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인 및 특허경영활동의 기본상황 　　① 특허인의 명칭, 통신주소, 연락방식, 법정대표자, 총경리, 등록자본금 액수, 경영범위 및 기존의 직영점 수량, 주소 및 전화번호 　　② 특허인이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한 기본상황 　　③ 특허인이 등록 비치한 기본상황 　　④ 특허인의 관련측이 피특허인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측의 기본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난 5년 간 특허인 혹은 관련측의 파산 혹은 파산신청 상황. 　　(2) 특허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의 기본상황 　　① 등록상표, 기업마크, 특허, 노하우, 경영모델 및 기타 경영자원상황에 대한 문자 설명 　　② 경영자원 소유자가 특허인의 관련측인 경우에는 당해 관련측의 기본정보, 수권내용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해 관련측과의 수권계약을 중지하거나 조기 해지할 경우에 당해 특허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설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인(혹은 관련회사）의 등록상표, 기업마크, 특허, 노하우 등 특허경영과 관련되는 경영자원의 소송 또는 중재 상황. 　　(3) 특허경영비용의 기본상황 　　① 특허인 및 제3자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비용의 종류, 금액, 기준, 지불방식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비용수납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기준을 공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의 수취 및 반환조건, 반환시간과 반환방식 　　③ 피특허인에게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비용의 용도 및 반환조건, 방식.  　　(4)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 조건 등 상황 　　① 피특허인이 반드시 특허인(혹은 관련측)으로부터 제품, 서비스 혹은 설비를 구매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 가격, 조건 등. 　　② 피특허인이 반드시 특허인이 지정한(혹은 승인) 납품사로부터 제품, 서비스, 설비를 구매해야 하는지의 여부 　　③ 피특허인이 기타 납품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납품사가 갖춰야 할 조건. 　　(5)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상황 　　① 업무교육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교육장소, 방식과 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술지원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경영자원의 명칭, 유형 및 제품, 시설장비의 종류 등을 포함한다. 　　(6) 피특허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방식과 내용 　　① 경영지도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영업장 선정, 인테리어, 점포관리, 광고판촉, 제품배치 등을 포함한다.　　② 감독 방식과 내용, 피특허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불이행 시의 책임부담③ 소비자의 고소와 배상문제에 대한 특허인과 피특허인의 책임분담. 　　(7) 특허경영점포망 투자예산상황 　　① 투자예산에는 하기 비용이 포함된다. 즉, 가맹비용, 교육비용, 부동산과 인테리어비용, 설비 ․ 사무용품 ․ 가구 등 구매비용, 초기재고, 물 ․ 전기 ․ 가스비용, 영업집조와 기타 정부허가 취득에 필요한 비용, 유동자금 　　② 상기비용의 데이터출처와 예산근거 　　(8) 중국경내 피특허인의 관련 상황 　　① 기존 및 예측하는 피특허인의 수량, 분포지역, 수권범위, 독점수권지역의 존재여부（있는 경우 예측하는 구체적 범위 설명 필요）에 관한 상황 　　② 기존 피특허인의 경영상황. 여기에는 피특허인의 실제 투자액, 평균판매량, 코스트, 총이익, 순이익 등 정보를 포함하며 동시에 상기정보의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9) 최근 2년간 회계사무소 혹은 회계감사사무소에서 감사한 특허인의 재무회계 보고서 요점과 회계감사보고서 요점. 　　(10) 최근 5년간 특허인의 특허경영과 관련한 소송과 중재상황. 여기에는 사건의 개요, 소송(중재) 청구, 관할 및 결과를 포함한다.　　(11) 특허인 및 법정대표자의 중대한 불법경영기록 상황 　　① 유관 행정사법부서로부터 3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상황 　　② 형사판결을 받은 상황 　　(12) 특허경영계약서 원본 　　① 특허경영계약서 샘플 　　② 특허인(혹은 관련측)이 피특허인에게 기타 특허경영과 관련한 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특허경영계약서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인은 홍보, 선전활동에서 기만, 오도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가 발표한 광고에는 피특허인의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한 수익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특허인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피특허인에게 비밀유지협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피특허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알게된 상업비밀은 그 특허경영계약의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특허경영계약이 종료된 후 피특허인이 계약관계로 인해 알게된 특허인의 상업비밀은 계약 만료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져야 한다.피특허인이 본 조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 사용하여 특허인이나 타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후, 피특허인은 특허인에게 그가 접수한 정보내용에 대한 회신(1식 2통)을 제시하여야 하며, 피특허인은 그에 사인하고 피특허인과 특허인이 각 한부씩 보관한다. 　　**제9조** 특허인이 특허경영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속이거나 가짜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피특허인은 특허경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특허인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특허인은 상무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신고사실이 확실한 경우 조례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11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상업 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상무부 령 2007년 제16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商务部令 2012年第2号　　修订后的《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已经2012年1月18日商务部第60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2年4月1日起施行。《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商务部令2007年第16号）同时废止。 部长：陈德铭 2012年2月23日 　　**第一条**　为维护特许人与被特许人双方的合法权益，根据《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开展商业特许经营活动适用本办法。 　**第三条**　本办法所称关联方，是指特许人的母公司或其自然人股东、特许人直接或间接拥有全部或多数股权的子公司、与特许人直接或间接地由同一所有人拥有全部或多数股权的公司。 　　**第四条**　特许人应当按照《条例》的规定，在订立商业特许经营合同之日前至少30日，以书面形式向被特许人披露本办法第五条规定的信息，但特许人与被特许人以原特许合同相同条件续约的情形除外。 　　**第五条**　特许人进行信息披露应当包括以下内容： 　　（一）特许人及特许经营活动的基本情况。 　　1．特许人名称、通讯地址、联系方式、法定代表人、总经理、注册资本额、经营范围以及现有直营店的数量、地址和联系电话。 　　2．特许人从事商业特许经营活动的概况。 　　3．特许人备案的基本情况。 　　4．由特许人的关联方向被特许人提供产品和服务的，应当披露该关联方的基本情况。 　　5．特许人或其关联方过去2年内破产或申请破产的情况。 　　（二）特许人拥有经营资源的基本情况。 　　1．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经营模式及其他经营资源的文字说明。 　　2．经营资源的所有者是特许人关联方的，应当披露该关联方的基本信息、授权内容，同时应当说明在与该关联方的授权合同中止或提前终止的情况下，如何处理该特许体系。 　　3．特许人（或其关联方）的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与特许经营相关的经营资源涉及诉讼或仲裁的情况。 　　（三）特许经营费用的基本情况。 　　1．特许人及代第三方收取费用的种类、金额、标准和支付方式，不能披露的，应当说明原因，收费标准不统一的，应当披露最高和最低标准，并说明原因。 　　2．保证金的收取、返还条件、返还时间和返还方式。 　　3．要求被特许人在订立特许经营合同前支付费用的，该部分费用的用途以及退还的条件、方式。 　　（四）向被特许人提供产品、服务、设备的价格、条件等情况。 　　1．被特许人是否必须从特许人（或其关联方）处购买产品、服务或设备及相关的价格、条件等。 　　2．被特许人是否必须从特许人指定（或批准）的供货商处购买产品、服务或设备。 　　3．被特许人是否可以选择其他供货商以及供货商应具备的条件。 　　（五）为被特许人持续提供服务的情况。 　　1．业务培训的具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包括培训地点、方式和期限等。 　　2．技术支持的具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包括经营资源的名称、类别及产品、设施设备的种类等。 　　（六）对被特许人的经营活动进行指导、监督的方式和内容。 　　1．经营指导的具体内容、提供方式和实施计划，包括选址、装修装潢、店面管理、广告促销、产品配置等。 　　2．监督的方式和内容，被特许人应履行的义务和不履行义务的责任。 　　3．特许人和被特许人对消费者投诉和赔偿的责任划分。 　　（七）特许经营网点投资预算情况。 　　1．投资预算可以包括下列费用：加盟费；培训费；房地产和装修费用；设备、办公用品、家具等购置费；初始库存；水、电、气费；为取得执照和其他政府批准所需的费用；启动周转资金。 　　2．上述费用的资料来源和估算依据。 　　（八）中国境内被特许人的有关情况。 　　1．现有和预计被特许人的数量、分布地域、授权范围、有无独家授权区域（如有，应说明预计的具体范围）的情况。 　　2．现有被特许人的经营状况，包括被特许人实际的投资额、平均销售量、成本、毛利、纯利等信息，同时应当说明上述信息的来源。 　　（九）最近2年的经会计师事务所或审计事务所审计的特许人财务会计报告摘要和审计报告摘要。 　　（十）特许人最近5年内与特许经营相关的诉讼和仲裁情况，包括案由、诉讼（仲裁）请求、管辖及结果。 　　（十一）特许人及其法定代表人重大违法经营记录情况。 　　1．被有关行政执法部门处以30万元以上罚款的。 　　2．被追究刑事责任的。 　　（十二）特许经营合同文本。 　　1．特许经营合同样本。 　　2．如果特许人要求被特许人与特许人（或其关联方）签订其他有关特许经营的合同，应当同时提供此类合同样本。 　　**第六条**　特许人在推广、宣传活动中，不得有欺骗、误导的行为，发布的广告中不得含有宣传单个被特许人从事商业特许经营活动收益的内容。 　　**第七条**　特许人向被特许人披露信息前，有权要求被特许人签署保密协议。 　　被特许人在订立合同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无论特许经营合同是否成立，不得泄露或者不正当使用。 　　特许经营合同终止后，被特许人因合同关系知悉特许人商业秘密的，即使未订立合同终止后的保密协议，也应当承担保密义务。 　　被特许人违反本条前两款规定，泄露或者不正当使用商业秘密给特许人或者其他人造成损失的，应当承担相应的损害赔偿责任。 　　**第八条**　特许人在向被特许人进行信息披露后，被特许人应当就所获悉的信息内容向特许人出具回执说明（一式两份），由被特许人签字，一份由被特许人留存，另一份由特许人留存。 　　**第九条**　特许人隐瞒影响特许经营合同履行致使不能实现合同目的的信息或者披露虚假信息的，被特许人可以解除特许经营合同。 　　**第十条**　特许人违反本办法有关规定的，被特许人有权向商务主管部门举报，经查实的，分别依据《条例》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予以处罚。　　**第十一条**　本办法由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负责解释。 　　**第十二条**　本办法自2012年4月1日起施行。原《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商务部令2007年第16号）同时废止。 |